

[붙임 2]

## 정부재정지원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WEST 프로그램은 직접 일자리 사업에 포함되므로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범주를 인정함.

**[참고]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① 저소득층,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결혼이민자, ⑦ 성매매피해자, ⑧ 위기 청소년, ⑨ 갱생보호대상자, ⑩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⑪ 노숙인, ⑫ 여성가장

범주	확인 방법	소속 학교 서류 제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확인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넓게 인정	<b>증빙자료 제출 불필요</b>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추후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예정)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단체(전문의) 확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20세~23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그 외 취업취약 계층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b>반드시 증빙자료 제출</b>  (※ 모집공고일 ('18.7.10.) 이후 발급서류)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 외국인등록증 (F2 또는 F5, F6 비자) · 국적 취득 후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위기 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갱생보호 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수형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범주		확인 방법		소속학교 서류 제출	
그 외 취업취약 계층	여성가장	구분	첨부서류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 모집공고일 (*18.7.10.) 이후 발급서류)
		배우자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관계등록부</li> <li>•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li> </ul>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 확정 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